

FTA 협상 시 금융분야의 주요 이슈

이영섭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장

최근 지역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 개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 협상에서 대두되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는 시장개방의 범위, 자유화 원칙, 그리고 협정의 깊이를 들 수 있다. 시장개방의 범위(coverage)는 금융시장 개방을 어디까지 어떤 접근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방식과 포함되는 서비스의 수를 다룬다. 자유화 원칙(liberalizing principles)은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4대 자유화 원칙으로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상업적 주재요건의 비부과, 양적인 비차별적 제한의 부재 등을 포함한다. 협정의 깊이(depth of commitments)는 협정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다. 양자 간 협정의 특성상 협상 당사국 사정에 따라 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정사례인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우, 금융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지 않았고, 또한 FTA에 따른 금융개방이 커다란 충격을 야기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 및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통해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었고 또한 위기극복 경험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보다 금융산업이 발전된 국가들로부터 추가적인 개방 압력이 강하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및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FTA 협상 대상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금융분야가 앞선 경우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주제어: 금융서비스 개방, 지역무역협정, 한·미 FTA, 한·EU FTA

I. 서론

최근 세계경제에서 통상분쟁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환율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환율조작이 글로벌 불균형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일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처럼 환율이 통상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환율변화에 따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환율은 1년에 수십 %씩 등락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국가에 있어서는 평균관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이다. 실질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와 환율변화에 따른 무역량 변화 효과를 비교해 봐도 어느 것이 더 크다고 결론짓기 어려우며, 단기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환율정책을 주요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소 퇴색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2016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회원국 거시경제 정책 당국의 공동 성명’에서 12개국의 통화재정 당국은 환율 절하 경쟁을 방지하기로 합의하고 외환시장 개입 상황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 당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환율은 실물거래보다도 금융거래에 훨씬 더 민감하므로 FTA 협상과정에서 금융이슈가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국제거래의 98% 이상을 금융거래가 차지하고 있고 단지 2% 이하의 거래만이 경상거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FTA 협상과정에서 금융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국제무역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 서비스 개방을 FTA 협상 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이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제II장에서는 FTA 협상 시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제III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미 FTA 협상과 한·EU FTA 협상에서 어떤 이슈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향후 FTA 협상 시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금융서비스 개방의 주요 이슈

1. 금융서비스의 정의

대부분의 금융개방 협상은 금융서비스 정의로부터 출발하는데, 금융서비스 정의는 금융개방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금융개방 방식은 크게 일방적 개방, 다자간 개방, 양자간 개방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일방적 개방이란 한 국가의 금융개혁 일환으로 타국과의 협의 없이 국내금융시장을 자유화 및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서비스 정의에 대해 특정한 표준을 말하기 어렵다.

다자간 방식의 금융개방을 하는 경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의 기본구조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개방하게 되므로, 금융서비스 정의도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유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GATS의 경우 부속서에서 금융서비스를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와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로 나눈 후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다자간 방식의 금융개방은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인 표준을 따른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국의 특성을 협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표 1〉 WTO 협정의 기본 구조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 등
기본원칙	GATT	GATS	TRIPs	DSU
세부사항	분야별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	GATS 부속서		
시장접근	분야별 일정표	분야별 일정표 및 MFN 예외사항		

자료: 저자 정리.

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MFN(most favored nation)

〈표 2〉 GATS 하에서의 서비스 무역 분류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여부	공급형태	정 의	금융부문 예 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 내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국경 간 공급 (mode 1)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서비스 자체의 이동)	원격 금융상품 구입
	해외소비 (mode 2)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결되는 경우(소비자의 이동)	해외에서의 금융상품 구입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 내에 주재하는 경우	상업적 주재 (mode 3)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자본의 이동)	금융기관의 진출
	자연인의 이동 (mode 4)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인력이 주재하는 경우(노동의 이동, 상업적 주재와의 관련여부는 불문)	외국 금융인력의 취업

자료: 저자 정리.

한편 양자 간 방식을 통해 금융개방을 하는 경우 FTA와 같은 개별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양자 간 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유형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NAFTA의 경우 금융서비스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적 속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금융적 속성을 가진 서비스에 동반하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기관으로 정의한다.¹ 그

러나 양자간 방식을 따르는 경우 협정 내용이 다자간 성격을 반영하면서도 양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니카라과아 FTA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정의하지 않고 있기도 하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협정이 상대국 금융기관,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의 투자자 및 투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2. 금융서비스 협상의 핵심 요소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는 시장개방의 범위, 자유화 원칙, 그리고 협정의 깊이를 들 수 있다.³

첫째, 시장개방의 범위(coverage)는 금융시장 개방을 어디까지 어떤 접근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금융서비스 공급방식과 협정에 포괄되는 서비스의 수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공급방식은 국경 간 거래만을 포함할 수도 있고 좀더 포괄적으로 국경 간 거래 및 상업적 주재에 의한 거래를 포함할 수도 있다. 국경 간 거래만 포함하는 경우, 일국의 영역에서 타국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거래, 일국의 거주자로부터 타국 거주자로의 서비스 거래, 그리고 타국의 영역 내에서의 일국의 국민에 의한 거래 등이 포함된다. 국경 간 거래 및 상업적 주재에 의한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국경 간 거래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투자 형태에 의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게 된다.

포괄되는 서비스의 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열거주의 접근방식(positive system)으로서, 각국은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들에 대해서만 개방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반면 포괄주의 접근방식

-
1. NAFTA, <https://www.nafta-sec-alena.org>.
 2.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는 Arbeláez, Flórez, and Salazar(2006), Echandi(2006), Goncalves and Stephanou(2006), Stephenson and Prieto(2006) 등을 참조할 것.
 3. 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는 Stephanou(2009), Tietje, Finke, and Dietrich(2010), Wang(2005)을 참조할 것.

(negative system)은 특별히 안 된다고 예외사항으로 나열하지 않을 경우 모두 개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서 훨씬 더 개방적이다.

둘째, 자유화 원칙(liberalizing principles)은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4대 자유화 원칙으로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상업적 주재요건의 비부과, 양적인 비차별적 제한의 부재 등을 포함한다.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은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특별한 대우를 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2국 간의 배타적인 특혜조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뜻한다.⁴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은 국내의 조세정책과 규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품(또는 외국기업활동)과 국내상품(또는 국내기업활동)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FTA에서 금융서비스를 협상하는 국가들은 내국민 대우와 관련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합법적 내국민 대우’로서 외국기업은 법률에 의해서만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기업이 처한 상황이 국내기업과 달라 실제 영업에 있어 제한을 받더라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한편 ‘경쟁적 내국민 대우’는 외국기업들이 경쟁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대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업적 주재 요건의 비부과(no local presence requirement)란 외국인이 자국 내에 상업적으로 주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외국인에게 자국 내에 상업적으로 주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내에 주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초기투자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자유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양적인 비차별적 제한의 부재(no quantitative non-discriminatory restrictions) 또한 4개 자유화 원칙의 하나로 포함된다. 많은 국가들은 기술적 고려

4. 김인준·이영섭(2013), 제24장.

또는 시장 규모를 감안해 서비스 제공 요건에 있어 양적인 비차별적 제한을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시장에서 영업이 허가된 은행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약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공공지를 유리하게 하는 한편 신규 진입자에게 차별적 행동을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협정의 깊이(depth of commitments)는 협정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느냐를 의미하는데, 협정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명성, 한도양허, 조부조항, 역행제동, 미래 자유화 약속 등이 있다. 투명성(transparentcy)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상대방 국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조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회지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도양허(ceiling binding)는 일반적인 관세상당치 계산 방법 대신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세율로 양허하는 방식으로서, 양허하기로 한 국가는 이러한 양허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시킬 수 없다.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은 비합치조치에 대한 동결로서 기존의 체계나 수단을 일정 기한까지 동결하며 그러한 수단이 미래에 더 비합치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역행제동(ratcheting)은 자유화 과정이 역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약속이다. 미래의 자유화 약속(future liberalization)은 보다 광범위하고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할 절차와 시한을 회원국 간에 설정하는 것이다.

III. FTA 금융부문 협상의 사례: 한국의 경험

1. 한·미 FTA 금융부문 주요 내용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유보조치 및 구체적 약속이 없는 한 상대국에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내국민 대우(자국민과 차별 금지) 및 최혜국 대우(제3국과 차별

〈표 3〉 한·미 FTA 협상 분야와 협의 채널

분 야	협의 채널
협정 운영	◦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 의장: 양국 통상장관
상품	◦ 상품무역 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 - 양국 대표로 구성 * 통관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Matters)
농업	◦ 농업무역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al Trade)
섬유	◦ 섬유 위원회(Committee on Textile and Apparel Trade Matters)
무역구제	◦ 무역구제위원회(Committee on Trade Remedies) - 적절한 수준의 관련 기관 대표들로 구성
SPS	◦ SPS 위원회(Committee on SPS Matters) - SPS 담당 대표로 구성
TBT	◦ TBT 위원회(Committee on TBT) - 양국 대표로 구성 - Coordinators: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무역대표부
개성공단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발효 1년 후 개최 (매년 최소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 시 수시 개최 가능)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 발효 후 구성, 발효 1년 내 개최
서비스/투자	◦ 미국 측 지방정부 비합치조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추진
금융	◦ 금융서비스 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금융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 Coordinators: 한국 재정경제부, 미국 재무부·무역대표부·상무부 *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 보험 작업반(Insurance Working Group) 설치
정부조달	◦ 정부조달 작업반(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 양국 대표로 구성
노동	◦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 - 양국 노동부 및 관계부처 고위관리로 구성
환경	◦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양국 환경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관리로 구성
자동차	◦ 자동차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 양국 대표로 구성(관련 규제기관 포함) - Coordinators: 한국 외교부, 미국 무역대표부
의약품	◦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Committee) - 양국 보건 및 통상담당 공무원이 공동의장 수임 * 의약품 분야 MRA 추진 등 규제협력을 위한 작업반 설치 근거 마련
수산	◦ 공동수산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

자료: 외교통상부.

주: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 장벽),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별도로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내 국민대우 등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존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금융부문은 총 17개 협상분야 중의 하나로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방방식이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한·미 FTA의 금융협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상대국의 금융기관,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의 법령, 관행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고유한 기능에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한·미 FTA 금융협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공공퇴직제도(예: 국민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앙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기획재정부 등)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한국의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대우(보증, 손실보전 등)는 원활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금융협정이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경우라도, 상업적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과 경쟁하여 공급하도록 허용된 금융서비스에는 금융협정이 적용된다.

한·미 FTA에서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쟁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통한 시장개방은 이미 대부분 진행되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금융부문 추가 개방범위는 제한적이었다. 그 중 주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신금융서비스,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보호, 후선업무 기능의 위임, 단기 세이프가드⁵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양국은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른 보험서비스 개방 대상에는 해상, 항공, 우주보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등이, 그리고 금융부수서비스 개방 대상에는 보험계리, 손해사정, 투자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등이 포함되었다.

5. 이와 관련된 논의는 신동백(2010), 하준경(2007) 등을 참조할 것.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나 신금융상품의 개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국내법상 허용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의 허용을 결정한 상태, 자회사, 지점 등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제공(국경 간 거래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불가). 이에 따라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당사국 감독 당국이 건별 인허가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정보는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협정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외부정보 유출방지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분석·평가업무를 본·지점 간에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융정보의 생성·저장을 위한 IT설비, 금융전산망 등의 해외이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후선업무(back-office)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한 인력채용·인사·회계 등의 업무를 의미하는데, 후선업무 기능의 위임과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화 경향을 감안하여,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자국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의 일부 후선업무 기능을 본점에서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단기 세이프가드는 국제수지와 대외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자본의 지급과 수취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위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며,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 외국인 거래법에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이 한·미 FTA 협정문에 반하지 않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대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몰수 및 이중 환율제 금지, 외환규제로 국내에 묶인 자산에 대하여 운용을 제약하는 행위 금지, 내외국차별 및 국가별 차별 금지 등에 합의하였다.

2. 한·EU FTA 금융부문 주요 내용

한·EU FTA 협상에서 유럽 측의 기본 입장은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에서 타결하는 것이었다.⁶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개방 방식, 금융협정의 적용 대상 등에 있어서는 한·미 FTA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경기부양 등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장 안정·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의 발동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협정문에서 예외로 취급하였다.

한·EU FTA에서 금융분야 주요 쟁점도 한·미 FTA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시장접근성, 후선업무 기능 위임, 금융정보 이전, 우체국의 보험업무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시장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이 동시에 포함되었다. 지점 및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적용했으나, 추가지점을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들에게 원화현물환거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국내법상 허용되는 신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지만, 상대국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 서비스가 한국에 없다면 우리 정부가 '엄격한 조건을 두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열거주의를 적용하였는데, 제공가능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로는 재보험, 금융데이터 처리 등이 포함되었다. 후선 업무 및 정보 이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에 합의하였다.⁷

당사자의 우편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6. Yi(2011)은 한·EU FTA에서 강조된 점을 설명하고 있고, Song(2011)은 두 FTA를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7.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ore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Annex 7-D, Kore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Article 7.43을 참조할 것.

대한 규제는 그 당사자의 우편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자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우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유럽 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우정 사업본부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인수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그러한 서비스가 자신의 영역에서 동종 보험인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규정해야 하도록 요구하였다.

IV. 결론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신금융서비스가 예상과 달리 과도하게 단기 유입될 경우 금융시장 경쟁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화되고, 미국 및 유럽 금융기관이 우수한 금융조건 및 신뢰를 앞세워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칠 경우, 기업고객들이 국내 은행이 아닌 미국 및 유럽 금융기관을 더 선호하게 되어 국내 금융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자산 시장 버블 및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 이동 증대로 대외취약성 및 위기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FTA에 따른 금융개방은 커다란 충격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 및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금융시장을 개방해왔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상당히 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새로운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보다 금융산업이 발전된 국가의 경우 추가적인 개방 압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와 관련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다소 유보적이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무제한 개방, 시장접근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금지 등을 강하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및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FTA 협상 대상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금융분야가 앞선 경우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⁸

투고일자: 2017-05-30 심사일자: 2017-06-09 게재확정: 2017-06-18

참고문헌

- 김인준·이영섭. 2013. 『국제경제론』. 제7판. 서울: 다산출판사.
-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2007.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 김준동 외. 2003.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호성. 2004. 「한·중·일 금융서비스 분야 FTA 체결의 효과: 분석과 전망」. 『산업경제연구』 17권 2호. pp. 439-455.
- 신동백. 2010.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경제연구』 23권 6호. pp. 3173-3200.
- 하준경. 2007.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여름호.
- Arbeláez, Maria A., Andrés Flórez, and Natalia Salazar. 2006. "Financial Services in the Colombia-U.S. Free Trade Agreement."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Study, Background Paper. World Bank.
- Echandi, Roberto. 2006. "The DR-CAFTA-US FTA Negotiations in Financial Services: The Experience of Costa Rica."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Study, Background Paper. World Bank.
- Goncalves, Marilyn Pereira and Constantinos Stephanou. 2006. "Financial Services and Trade Agreemen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 Overview."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4181. World Bank.
- Kore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Brussels, 6 October 2010. Entered into

8. 일부 연구들은 한·중 FTA 및 한·중·일 FTA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제시하고도 있다. 김자봉 외(2007), 김준동 외(2003), 문호성(2004), Lee(2014) 등을 참조할 것.

- force 1 July 2011.
-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Washington, D.C., 30 June 2007.
Entered into force 15 March 2012.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7 December 1992.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4. <https://www.nafta-sec-alena.org/Home/Legal-Texts/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A1416>.
- Lee, Mansoo. 2014. "China-Korea FTA Negotiations: A Launch Pad to Strengthen
Korea's Financial Industry in Global Market." *KIF Weekly Financial Brief*,
14(8): 6-9.
- Song, Yeongkwan. 2011. "KORUS FTA vs. Korea-EU FTA: Why the Differences?"
KEI Academic Paper Series, 6(5): 21.
- Stephanou, Constantinou. 2009. "Including Financial Service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Lesson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for Chin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No. WPS 4898. World Bank.
- Stephenson, Sherry M. and Francisco Javier Prieto. 2001. "Evaluating Approaches to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sights from Regional Experience in
the Americas." OAS Trade Unit Studies Working Paper.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Tietje, Christian, Jasper Finke, and Diemo Dietrich. 2010. "Liberalization and Rules
on Regulation in the Field of Financial Services in Bilateral Trade and
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 A Scientific Study."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11).
- Wang, Jiangyu. 2005. "Financial Liberalization in East Asia: Lessons from Financial
Crises and the Chinese Experience of Controlled Liberaliz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mimeo.
- Yi, Jong-Goo. 2011. "Korea-EU FTA – Financial Services." Presentation for Korea-EU
FTA Seminar. Kim & Chang.

Financial Issues in FTA Negotiations

Yeongseop Rhe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issues have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rec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Three key issues in the opening of financial services are the coverage of liberalizing commitments, liberalizing principles, and the depth of commitments. Coverage defines which activities are subject to the disciplines of the agreement, and comprises of the modes of supply and the number of service sectors included in the treatment. Liberalizing principles are to guarantee indiscrimination, and include MFN (most favored nation), no local presence requirement, national treatment, and no quantitative non-discriminatory restrictions. The depth of commitments may vary substantially, and several instruments are used to secure the commitments. Despite worries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financial opening, the Korea-United States FTA and Korea-European Union FTA had little impact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e main reason is that Korea had already experienced a financial opening to join the OECD as well as the overcoming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However, we still need to promote further financial system reforms to cope with new challenges that may arise from future FTA negotiations.

Keywords: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regional trade agreement, Korea-US FTA, Korea-EU FTA

